

제 51 회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 소집 통지 연월일 : 2013년01월25일(금)
2. 회의 연월일 : 2013년02월05일(화) 19:00 ~ 21:00
3. 회의 장소 :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프레지던트 호텔
4. 이사 정수 : 8명
5. 재적 이사 : 8명
6. 참석 이사 : 7명

이사장 양영희, 이사 : 조용호, 김홍용, 안관식
윤인자, 김용재, 이정숙
간사 : 박준호

7. 결석 이사 : 1명(허인구).

8. 회의 안건

- 1) 소청심사청구 결정 통지(2012-428 해임처분 취소청구) 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(재징계의결요구)에 의거한 의결 심의 건.
- 2) 소청심사청구 결정 통지(2012-428 해임처분 취소청구) 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(재징계의결요구)에 따른 강육구(조교수) 교원징계 요구에 의거한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의결 심의 건.

9. 회의내용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금년은 유난히도 춥고 한파가 심한 겨울이었지만 봄소식을 전하는 입춘도 지나고 5일 후면 구정 설 명절입니다. 그동안 이사님들의 안부와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.

금일 제51회 이사회 회의 이사정수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금일 회의 안건 제1호의 안 소청심사청구 결정 통지(2012-428 해임처분 취소청구) 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(재징계의결요구)에 의거한 의결 심의 건을 간사로 하여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간 사 (사무처장 박준호) : 제1호의 안 소청심사청구 결정 통지(2012-428 해임처분 취소청구) 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(재징계의결요구)에 의거한 의결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.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간사로부터 상정된 제1호의 안 소청심사청구 결정 통지(2012-428 해임처분 취소청구) 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

김홍용
양영희
김용재

조용호
이정숙

안관식
윤인자

78조의3(재징계의결요구)에 의거한 의결 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안건은 제49회(2012년09월20일) 이사회 회의 제1호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된 내용입니다.

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본 법인 앞으로 식품영양과 강옥구(조교수)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처분을 취소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.

징계처분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요구 제청 안 심의, 학교의 장 징계제청, 이사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
따라서 본 법인에서는 이사회 회의를 재소집하여 식품영양과 강옥구(조교수)교원의 징계의결(해임)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마치고 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사 (윤인자) : 저는 제49회 이사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금일 이사회 회의도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.

이 사 (조용호) : 윤인자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.

이 사 (김용재) : 삼청입니다.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윤인자이사님 동의, 조용호 이사님 동의에 재청, 김용재 이사님께서 삼청까지 하셨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.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석이사 (전원) : 거수로서 찬성하다.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그럼 이사님들께서 제1호의 안에 대해서 전원 동의 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간사는 제2호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간 사 (사무처장 박준호) : 금일 회의 안건 제2호의 안 소청심사청구 결정 통지(2012-428 해임처분 취소청구) 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(재징계의결요구)에 따른 강옥구(조교수) 교원 징계 요구에 의거한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의결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.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간사로부터 상정된 제2호의 안 소청심사청구 결정 통지(2012-428 해임처분 취소청구) 결정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(재징계의결요구)에 따른 강옥구(조교수)교원 징계요구에 의거한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의결 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김 홍용

양 영희

이 정숙

조용호 안관석 윤인자
이정숙

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본 법인 앞으로 식품영양과 강옥구(조교수)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있어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 처분을 취소 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.

징계처분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요구 제청 안 심의, 학교의 장 징계제청, 이사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조직에 대해 이사님들께 의결을 받고자 하며 그리고 재직교원 중에서 근태상황이 불량하거나 업적평가가 불량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교원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.

본 법인 정관 제6장 교직원 제2절 제56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) ①.② 의거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7인의 위원으로 조직,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,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

그래서 서정대학교 재직 교원 중에서 6명(이승현.조남재.박우대.김영천.이지훈.현영렬), 이사 중에서 1명(김홍용) 총 7명 위원으로 조직하고 이사님들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이 사 (조용호) : 저 역시도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.

이 사 (안관식) : 조용호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.

이 사 (김용재) : 삼청입니다.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조용호 이사님 동의, 안관식 이사님 동의에 재청, 김용재 이사님께서 삼청까지 하셨으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. 찬성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로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석이사 (전원) : 거수로서 찬성하다.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이사님들께서 제2호의 안건에 대해서 전원 동의 하였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이상으로 금일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이사님들의 고견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이 사 (전원) : 없습니다.

의 장 (이사장 양영희) : 설 명절 준비와 일상생활에 바쁘실 텐데 시간을 할애하시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후일을 증하기 위해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는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김 홍 용
양 영 희
김 용 재

조용호 안관식 윤인자
이정수

2013년 02월 05일

이	사	장	양 영희	(한)
이	사	조	용호	(한)
이	사	안	관남	(한)
이	사	문	인치	(한)
이	사	김	홍용	(한)
이	사	이	정숙	(한)
간	사	김	주호	(한)
이	사	이	동재	(한)